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40호 2010. 6. 14. (월)

고 시	
-----	--

○ 고시 제2010-46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2

공 고	
-----	--

○ 공고 제2010-419호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4

##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입립마당 → 북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

**발행:울산광역시북구 편집:문화홍보과(☎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복구 제2010-46 호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적도근점 명칭 및 번호 : 별지조서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동부원점
3. 좌표 : 별지조서
4.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 별지조서
5. 측량성과 보관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일련 번호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토지소재지	설치년월일	표지 재질	비고
		X좌표	Y좌표				
1	261	238471.12	229451.55	천곡동 1024-24	2010-05-19	표철	소관청분
2	263	238348.85	229602.79	천곡동 659-4	"	"	"
3	902	238251.71	229644.05	천곡동 1024-13	"	"	"
4	709	240477.35	231187.16	중산동 528	"	"	"
5	885	240453.57	230916.28	중산동 531-1	"	"	"
6	886	240466.85	230956.42	중산동 530-10	"	"	"
7	887	240481.24	231011.88	중산동 530-15	"	"	"
8	888	240514.69	231050.76	중산동 1167	"	"	"
9	889	240505.18	231107.40	중산동 289-3	"	"	"
10	892	240505.26	231149.03	중산동 289-3	"	"	"
11	327	239627.13	236402.14	대안동 1085	"	"	"
12	328	239544.72	236438.94	대안동 847	"	"	"
13	329	239456.33	236523.25	대안동 498	"	"	"
14	331	239388.62	236750.56	대안동 1059-1	"	"	"
15	332	239361.59	236847.33	대안동 1093	"	"	"
16	333	239293.66	236970.46	대안동 1059-1	"	"	"
17	334	239195.91	237005.46	대안동 1059-1	"	"	"
18	335	239114.83	237079.69	대안동 1059-1	"	"	"
19	336	239080.57	237241.21	대안동 1071-2	"	"	"
20	337	238989.61	237385.91	대안동 1070	"	"	"
21	338	238943.75	237452.89	대안동 산80-1	"	"	"
22	341	239245.03	237689.95	대안동 1041-1	"	"	"
23	342	239273.04	237835.35	대안동 166	"	"	"

##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방범용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위치와 설치사실을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 북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방범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

2. 설치 및 행정예고 목적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주민의 안전 확보하고자 하며, 카메라 설치에 따른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0년 6월 15일 ~ 7월 5일

## 5. CCTV 설치예정 위치

연번	설치예정 장소	설치사유	설치방식	비고
1	약수교차로 앞	야간 부녀자 성추행, 폭력 예방	고정식 1대	중부경찰서
2	명촌지하차도 앞	"	고정식 2대	"
3	무룡터널 입구	범인 검거용(차량번호 인식용)	차량번호인식용 2대	"
4	신명교 앞	"	차량번호인식용 2대	동부경찰서

## 6. 의 견 제 출

- 방법용 CCTV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2010. 7.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CCTV 설치위치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북구청 총무과 (☎052-219-7233)